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3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

발 의 자:이재강·윤종군·양문석

김우영 · 정을호 · 문금주

서미화・김문수・김 윤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 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,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,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,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·관리·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국가인권교육원)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.
 -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
 -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
 - 3.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
 - 4.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
 - 5.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-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,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 -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⑤ 그 밖에 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국가인권교육원)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.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장사 양성
	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 한 교육 훈련 3.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의 지원 및 관리 4.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연구
	5.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 을 두되,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

<u>보한다.</u>

-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⑤ 그 밖에 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